

『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장세만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비만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비만예방 실천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비만예방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비만관리를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「건강증진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
-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시 전문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비만예방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비만친화 식품의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 운영과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수 있도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,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비만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
- 따라서,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